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국 가 교 육 위 원 회 직 제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및 하부조직(안 제4조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도록 함.

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9조 및 별표 1)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이체되는 공무원

의 정원 21명(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포함한 31명(정무직 3명, 교육공무원 11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이하 16명)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제2조(직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① 교육발전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
4. 위원회 회의록·속기록의 작성 및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8. 교육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총괄
1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관리

12.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작성지침 수립·관리

13.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14.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15.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①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및 국민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고시
5.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6. 국가 사회적 요구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8.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연구·개발
9.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실시
10.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11.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12.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14.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15.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참여지원과) ① 참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견 수렴·조정 대상 정책 의제 발굴
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
5. 예산 편성, 집행 조정 및 결산
6. 조직·정원의 관리
7.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8.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9.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관리·운영
11.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3. 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 문서의 분류·접수·발송 등 문서관리
16.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7.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18. 자금의 운용·회계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20. 민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민참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대통령령 제0000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3명(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로부터 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대통령령 제0000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8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을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로부터 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별표 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총계	31
정무직 계	3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2
특정직 계	11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교육연구관	2
교육연구사	8
일반직 계	17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 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 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 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6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	

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
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
사 또는 편사연구사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
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식품위
생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별표 2]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부칙 제3조 관련)

총계	23
정무직 계	3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2
특정직 계	3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교육연구사	2
일반직 계	17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 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 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 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6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	

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 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 사 또는 편사연구사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 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식품위 생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